#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55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전종덕·박수현·김 윤

이수진 · 송옥주 · 서미화

임미애 · 용혜인 · 한창민

추미애 · 김선민 · 소병훈

김준형 · 정혜경 · 윤종오

의원(15인)

####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식량 수출국들이 곡물 수출에 제한을 가하고,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화하고 있고, 이상기온을 비롯한 기 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식량 대란을 예고하는 등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가 현실화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정확히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국가는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

한편, 2018년 12월 유엔 총회는 농업과 먹거리의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하였음.

현재 농촌지역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는 농촌지역 공동화로 이어져 사회적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가 힘들 고 각종 생활서비스 공급이 감소하여 농촌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에 법 제명을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농민권리선언이 명시한 농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농민이 계속 농사지을수 있도록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며,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농업을 장려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에서 평등을 실현하도록 하여 식량주권 확보를 비롯한 국가책임농정 시행과 공공농업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농민·농업·농촌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 해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 ·농촌에서 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산물의 유통 등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그 가족을 농민이라 함(안 제3조제2호).
- 다. 농민은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 농산물가

격을 생산비용과 연계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짐(안 제7조).

- 라. 농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농사지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건강 위해 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9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하며 적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17조).
- 바. 모든 사람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충분하여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접근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 5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안 제33조및 제34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제 거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52조).
- 아. 국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시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생산비와 농민의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을 설정하여야함(안 제61조 및 제62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과 농촌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민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68조).
- 차.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으로 확보 · 보존되고 소중히

- 이용·보전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됨(안 제69조).
- 카. 농업·농촌 기후위기 적응 종합계획 수립 시 농업의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여건 변화 예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5조).
-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허가할 경우 해당 지역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농지를 보전하며 주민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그 수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96조).
-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농업·농민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 여야 함(안 제106조).
-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출산, 노인질환, 농약 중독,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 등에 대한 농촌 지역의 필수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111조).

법률 제 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민·농업·농촌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식량자급을 달성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하여한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농촌에서 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는 농민의 권리와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내며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농업을 발전시켜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국가책임농정을 수행하며, 농업의 안정적 지속을 위하여 공공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한다.

- 2. 농민은 식량 생산 주체로서 농민의 권리를 누리며 농업·농촌을 유지·발전시키며 평등을 실현하는 농촌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 3. 농업은 식량자급을 달성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 4. 농촌은 농촌주민이 도시와 동등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갖춘 생활 공간이자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생산 기반, 고 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익공간으로 발전시켜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농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이 법상 농민으로 본다.
  - 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6호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제7호의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 수출·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 다. 농촌 지역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활용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서 농 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4. "농업노동자"란 제2호가목·나목의 사람이나 제3호의 농업법인이 영위하는 농업 또는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활동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급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5.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민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6.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 역
- 7.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을 말한다.

- 8.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주권 실현 및 식량자급 달성 촉진
  - 나.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대
  - 다. 기후위기 대응 기여
  - 라.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마. 수자원의 형성과 유지
  - 바.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사. 전통농업에 기반한 고유한 지식과 문화의 보전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민·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책임농정을 통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식량자급을 달성하며,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농지 확보·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농민수당 등을 통하여 공공영역을 넓혀나가고, 국민들에게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하여 생산한건강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과 농촌을 지속가능하게발전시키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서 기후위기에 적응하고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며, 농민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민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농촌에서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실현하며 농촌공동체 유지를 통하여 국 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계획적 생산을 통한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농업생산의 개선,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민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의 지속을 위하여 우리 농산물 이용과 농민의 적정 소득 보장에 협력 하여야 한다.
- 제5조(농민의 날) ① 농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민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민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민·농업·농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농민의 권리

제7조(농민의 식량주권) 농민은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 농산물가격을 생산비용과 연계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진

다.

- 제8조(종자권) ① 농민은 농업을 위하여 자신이 보유해온 종자와 유전 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그 활용에 따르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고, 농가에서 보존한 종자 또는 번식 물질을 보관・활용・교환 및 판매할 종자권을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보유해온 토종종자의 사용을 확대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토종종자 보존·보급, 토종농작물 생산비 보전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들이 적기에 공정가격으로 충분한 양의 양질의 종자를 선택에 따라 파종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안전하게 농사지을 권리) ① 농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농사지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민은 농약 또는 농업용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권리 및 농업이나 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에 노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농약 사용 또는 폐농약 및 농약용기류 방치 등으로 건강 위해 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처리·운송·활용·이송·유포 또는 환경 방출로 농민 및 농촌주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 발생, 작물재배 환경 저해, 토종동식물 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또는 생물다양성의 지속적인이용의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피해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물에 대한 권리) ① 농민은 농업에 필요한 깨끗한 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농업 생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농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의 남용을 막아 적정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오염원을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며 수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농산물 가공권) ①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유통·수출·판매할 권리를 갖는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농민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가공(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 등에 절이거나, 숙성・발효시키거나, 즙을 짜거나, 가열하는 등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농산물

가공품을 제조·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의 농산물 가공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공 시설 설치 및 유통·수출·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농업노동자의 권리) ① 농업노동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노동자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등 노동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수준에 이르게 하고 농업노 동자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국가는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 ③ 농업노동자는 노동의 필요에 따라 노동하는 장소 인근에 주거해야 할 경우에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음식과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농업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농업노동자는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 ⑤ 농업노동자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인 농업노동자의 권리) ① 외국인 농업노동자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외국인 농업노동자는 입국 시 허용된 체류기간 동안에는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한 국내에 체류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외국인 농업노동자는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장 농민 · 농업 · 농촌 정책의 기본방향

제15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 ·농업·농촌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1. 농민의 권리 보장과 적정 소득 보장
- 2. 식량주권 실현과 식량자급 목표 달성
- 3. 국가책임농정 실현 및 공공농업 기반 확보
- 4. 성인지 관점에서 농업정책 수립 및 농촌에서 평등 실현
- 5.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 6. 농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기후위기 적응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

- 증진되도록 하고 효율성을 증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농업·농촌 정책을 세울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 제16조(식량주권 실현과 식량자급 달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량에 관한 정책을 생태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농지 및 생산기반 확충, 농업종사자 확대,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농업 기술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7조(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하며 적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운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업 자재산업 등 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민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토지의 특성과 지역 환경에 맞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증진하고 그로부터 얻어진 농업생

산지식을 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제19조(농촌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농업과 농업 연관 산업공간 및 도시와 연계된 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교육 및 그 밖에 복지혜택을 넓히는 데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20조(농업·농촌의 기후변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농촌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탄소중립사회로 효과적으로 전환하 며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기후변화 대응 통합관리체 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1조(주민자치조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마다 특별한 가입조 건 없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주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도모

-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농촌 지역의 주민자치조직이 형성·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농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의 권 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정보제공,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통일 대비 농민·농업·농촌 정책) 정부는 남북한 간의 농산물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농업협력및 농산물 교류로 남북 주민 모두 식량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적협력을 증진하며, 통일을 대비한 농민·농업·농촌 정책을 세우고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통상 및 국제협력)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현황 및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 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울 경우 식량주권 실현

과 식량자급률 제고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농촌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농민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 시행으로 농업·농촌에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수립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통상조약 개정을 포함한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농민 · 농업 · 농촌 정책의 수립 · 시행

제1절 농민 · 농업 · 농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 제25조(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민·농업·농촌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민 · 농업 · 농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2. 농민의 식량주권과 종자권 등 권리 실현을 위한 계획
- 3.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민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한 계획
- 4. 농민의 안전 · 보건 증진 계획
- 5. 농업노동자의 인간존엄을 위한 노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계획
- 6. 국가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식량자급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 7. 품목별 식량자급 목표, 연도별 식량자급 목표 설정 및 그 추진계획 수립,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8. 제7호의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위한 농지총량관리제 실시 및 우량농지확보방안
- 9. 제7호의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위한 농업용수 등 필수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 10. 식량자급률 제고 대상 농산물의 우선 구매 등 식량자급률 제고 확보방안
- 11.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 12. 여성농민, 소농과 가족농에 대한 지원 및 농업종사자 확충에 관한 계획
- 13. 농업·농촌에서 성·인종·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와 평등 증진 계획

- 14. 농촌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복지를 누리며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
- 15. 농업·농촌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 기후위기 적응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농촌 기후위기 적응 종합계획
- 16. 농업·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및 통상 조약 개정을 포함한 보완계획
- 17.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민·농업·농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18. 비용 절감 등 그 밖에 농민·농업·농촌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9. 농민·농업·농촌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기금의 운영계획 및 재원의 조달방안
- 20. 그 밖에 농민·농업·농촌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 ③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민·농업·농촌 정책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민·농업·농촌 정책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⑥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식량자급률) 국무총리는 제25조제2항제6호·제7호에 따른 식량 자급 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마다 설정·고시 하고 농민·농업·농촌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며, 이 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전체 곡물(사료 곡물을 포함한다)의 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자급률
  - 2. 전체 식용 곡물의 자급률 및 주요 식용 곡물의 자급률
  - 3. 서류, 채소류, 과실류의 자급률
  - 4.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계란의 자급률
  - 5.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 6.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제27조(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 ① 농민·농업·농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민·농업· 농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곡물자급률 및 열량 자급률 등 목표 설정 과 자급률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 3. 농지 총량 설정 및 농지 전용 방지, 농지 확보에 관한 사항
- 4. 농민 육성 및 농민과 농업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 5.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과 기후정의 실현 에 관한 사항
- 6. 남북 농업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7. 농업 분야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통상조약 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 8.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농민ㆍ농업ㆍ농촌정책
- 9. 위 각 사항의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 10. 농민・농업・농촌정책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11. 제31조에 따른 농민·농업·농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 12. 그 밖에 농민·농업·농촌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의 결에 부치는 사항
- 제2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민간 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민 단체 추천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제1호의 사람은 3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을 수 없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워
-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가. 농민을 대표하는 전국 단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나. 주요 농산물 생산자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다. 농업노동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라. 소비자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마. 농민ㆍ농업ㆍ농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 조정사항을 전문

- 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 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무국을 둔다.
-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지역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 ① 시·도에 시·도 농민· 농업·농촌정책위원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민 ·농업·농촌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민·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기본계획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5조와 제29조 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매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31조(농민·농업·농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부는 매년 농민 ·농업 ·농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제26조에 따른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민·농업·농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민·농업·농촌 현황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2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농업·농 촌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식량주권 실현 및 식량자급 달성

제33조(식량주권) ① 모든 사람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충분하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 ② 농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우리나라에 맞는 농업과 식량 체계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 ③ 농민은 국토와 수자원, 종자, 가축 및 생물다양성을 이용하고 관리하여 식량을 생산할 권리를 갖는다.
- 제34조(국가 식량자급 목표 등) 국가는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사료 곡물을 포함한다) 50%, 열량 자급률 80%를 달성하는 것을 국가 식 량자급 목표로 한다.
- 제35조(중장기 식량자급 목표 등) ① 국가는 2035년까지 곡물자급률 (사료 곡물을 포함한다)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열량 자급률을 70% 이상의 범위에서 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달성하는 것을 국가 중장기 식량자급률 달성 목표(이하 "중장기 식량자급 목표"라 한다)로 한다.
  - ② 국가는 중장기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곡물, 채소, 과실, 육류 등 품목별 식량자급 목표(이하 "품목별 식량자급 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중장기 식량자급 목표와 품목별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식량자급 목표(이하 "연도별 식량자급 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제36조(이행현황의 점검 및 보완계획 수립 등) ①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식량자급 목표 및

품목별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식량자급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식량자급률이 연도별 식량자급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식량자급률이 연도별 식량자급 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자급 목표 달성보완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식량자급률이 연도별 식량자급 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에 목표 달성을 위한 보완계획 수립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요구하고,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보완계 획 및 예산확보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 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식량자급 목표 달성 보완계획안 작성, 제4항에 따른 보완계획 및 예산확보계획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우선 구매 요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자급률이 낮은 농산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38조(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계약재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자급률이 낮은 농산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해당 품목 생산·가공·유통·판매업자 사이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를 위하여계약재배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9조(식량의 안정적 공급) ① 정부는 식량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 (備蓄)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 및 확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

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절 건강한 농산물 공급

- 제40조(참여인증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생태적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적절한 평가 및 인증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 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1조(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이 안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 이력 추적,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축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2조(농산물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3조(수입 농산물에 대한 위해성 관리)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수입 농산물의 위해성이 의심될 경우 수입을 임시 중단하고 위해평가 및 유통금지조치등을 취하여야 한다.
- 제44조(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와 관리 등)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산물 을 수거하여 조사하고 유통금지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제45조(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품 등의 연구개발, 시설 설치 및 확충 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유통·판매하는 농민에 대하여 시설 기준 완화 및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6조(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 등) ① 정부는 농민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농산물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절 농민의 양성 및 농업 종사자 확충

- 제47조(가족농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촌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농(혼인한 부부또는 결혼과 유사한 공동체를 구성한 쌍방이 모두 제3조제2호가목·나목의 농민으로서 공동으로 제3조제1호의 농업 또는 농산물의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농가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농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여건 개선, 돌봄의 평등한 분담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8조(농업 종사자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 유지를 위하여 농업 종사자를 늘리고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며 안정적 소득과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한다.
- 제49조(후계농민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민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0조(전업농민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민

- (이하 "전업농민"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민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1조(여성농민에 대한 동등 대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이 농업 종사, 종자 보존 및 전통 농법과 문화 계승, 농가소득 보전, 가족 돌봄 등을 통하여 농업·농촌을 존속시키는 중추적 역할을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여성농민을 남성농민과 동등한독립적인 농업 주체로 대우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여성농민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2조(여성농민의 평등권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에 대하여 농업노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제거하고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이 농업협동조합 및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등 생산자단체에서 독립적인 농업 주체로서 단체활동 전반에서 동등한 의사결정참여권과 금융이용기회 등을 누릴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이 농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농촌의 유지·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여성농민이 주민 자치조직의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세우 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3조(가족농 구성원의 평등한 권리 보장) ① 가족농 구성원인 부부 또는 결혼과 유사한 공동체를 구성한 쌍방 사이에서는 농지와 농업 생산설비에 대하여 부부 또는 쌍방의 공유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 로 본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이 농지와 농업생산설비의 소유와 이용 등에서 가족농의 다른 구성원과 평등한 지위를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농지대장 공동 명의 기재 등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4조(농민 등의 법인 설립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 등이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농업 생산 증대와 농산물의 출하·유통 ·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영농조합법인: 제3조제2호가목·나목의 농민 및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할 것
  - 2. 농업회사법인: 제3조제2호가목·나목의 농민, 제3조제5호의 생산 자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넘을 것

- 제55조(기존 농업법인의 전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제54조 각 호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기준을 충족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6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기법의 개발과 벤처농업 등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 제57조(귀농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민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농업 등 진입·유지를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8조(농업 인력 확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의 농업 지속 및 파종·수확에 필요한 농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혹은 근로자공급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하게 농민 또는 농업법인에 농업노동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직업소개사업자 등"이라 한다)

- 는 폭리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노동자를 공급받는 농민 등이 직업소개사업자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항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밖에 노동 관계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5절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민의 적정 소득 보장

- 제59조(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민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0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 및 가격폭락으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 (旱害), 수해, 풍해, 냉해, 폭염, 고온, 병충해, 기후변화 등 농업 재

해 및 가격폭락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1조(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① 국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을 안 정시켜 국민 생활의 부담을 덜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여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요 농산물 공급 과잉 시 공공이 매수하여 공급 부족시 방출하는 공공수급제(이하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라 한다)를 실시하여야한다.
  - ② 국가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함에 있어 주요 농산물의 선정 및 매수·방출 시기와 규모, 가격 결정에 농민의 참여를 보장 하고, 식량자급률 향상이 시급한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의 적용 대상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2조(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의 공정가격 설정) 국가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시행 시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비와 농민의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수급안정조치에 대한 국가의 지원) ① 지방자 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수급안정조치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 민에 대하여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경작면적 조절, 출하 조절, 시장가격 차액보상 등 수급안정조치를 실시할 경우 국가 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의 수급안정조치의 적용 대상 농산물과 참여 농민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4조(농업생산비용 경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농업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부자재 등 농업생산비용 경감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5조(농산물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6조(공정가격 범위 설정 및 생산자단체의 참여권 보장)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제65조제1항의 유통시설에서 농산물 유통 시 생산비 와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공정가격 범위를 설정하는 절차 를 두고 이에 생산자단체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농산물 수급안정 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7조(공익 직접지불제도) ① 국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제3조제2호가목에 한정한다) 및 농업법인(제54조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소득안정, 소농(제3조제2호가목의 사람 가운데 경작 면적, 소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소득 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시 소농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 향상이 시급한 품목 재배 면적 증대 및 친환경농업 확 대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③ 공익직접지불금의 액수는 농민의 적정 소득 보장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
- 제68조(농민수당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과 농촌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민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농민수당 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와 금액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수당 등의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주민자치조직의 결정에 따르도록 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수당 등이 농민과 농촌주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향상에 충분한 수준이 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절 농지의 보전과 확충

- 제69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①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남북 주민 및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에서 확보·보존되고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
  - ②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70조(경자유전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를 실경작자의 소유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71조(농민 등의 농지 소유) 농지는 농민(제3조제2호가목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농업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만이 소유할 수있다.

- 1. 영농조합법인
- 2.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제3조제2호가목・나목의 농민,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 나.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주식회사·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이 제3조제2호가목·나목의 농민일 것
  - 다.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주식회사·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이 제3조제2호가목 ·나목의 농민일 것
- 제72조(예외적 농지 소유 허용) 제71조 이외의 농지 소유는 다음 각호에 따라 「농지법」이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에 이용하여야 한다.
  - 1. 공공단체 등이 농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 2. 상속, 이농, 담보농지취득 등 일정 기간 내 처분 조건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
  - 3. 농업진흥지역 외 1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지 등 일정 면적 이하 농

지만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정한다.

- 제73조(농지의 이용 증진 및 공공농지의 확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농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청년농민, 귀농인을 비롯한 실경작농민이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임대 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74조(농지임차인 등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경작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임차인보호에 관한 법령 제정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위탁하고자 할 경우 농지 관리청을 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인 간의 농지임대차 등의 경우계약체결사실을 농지관리청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의 차임청구권(명목에 관계없이 차임 상당 금원청구권을 포함한다)은 효력을 잃는다.
- 제75조(농지의 보전과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주권 실현과 남북 주민 및 미래세대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규모로 농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총량관리제 및 우량농지·공

공농지 확보 목표 설정 등 농지의 보전과 확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6조(농지전용 등 제한) ① 농지는 농업의 유지 및 농촌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1조제1항 등 법률에 정한 사유로도 전용될 수 없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전용과 타용도 일시사용 및 농지 지목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전용 등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와 개발자로부터 그 이익을 환수하여 농지총량유지와 우량농지확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실태를 파악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지목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 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77조(농지관리청) ① 농지총량관리와 경자유전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둔다.

- ② 농지관리청은 농지총량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처분명령, 농지은행사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와 관련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농지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농지관리청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제2항, 제3항에 필요한 세부 관장 업무의 내용 및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8조(농지위원회) ① 농지의 보전, 취득 및 이용의 관리를 위하여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농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농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79조(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용수구역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워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용수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80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농민 증가 등 농업 인력구조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여성농민의 농업참여를 촉진하며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여성이 사용하기 적합한 농기계 구조개선을 포함한다),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농업기계·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 검 및 정비와 농민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 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1조(농업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운영기법, 농민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2조(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3조(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육성)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농촌의 육성과 발 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농업·농촌 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

급·확산

-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융복합에 필요한 사업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4조(토종종자와 전통 농법 등의 공유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종종자를 비롯한 재래종 농업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농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국내 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법, 농산물의 전통 가공방법 등을 보존하고, 국민 모두가 전통 농법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새로운 발명에 의한 영농기술·생산방법·가공방법, 상표, 지리적표시 등 농업·농촌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향토산업·농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한다.
- 제85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 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86조(농민과 농업법인의 소득증대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과 농업법인이 지속적인 운영 혁신을 통하 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과 농업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과 농업법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 2. 농업 재해 및 농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 3. 고령 농민의 농업 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이전 등을 위한 지원
  - 4. 농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 6. 농업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농업투입재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 7.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직업을 전환하거나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

령 농민의 농업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민에 대하여 직업 전환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 2. 직업전환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 3. 실직농민의 생활안정지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직업전환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87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① 정부는 농업생산을 증진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민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민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8조(농민 및 농업법인의 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민 또는 농업법인에 대 하여 농가구성원, 농업법인 조합원·출자자, 농업노동자,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9조(치유농업의 진흥) 정부는 농업, 농촌의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절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90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1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 를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2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민·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91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절 농업ㆍ농촌의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적응

- 제93조(기후위기 대응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이 기후위기 대응 기여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지원할 수 있다.
- 제94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 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 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농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95조(농업·농촌 기후위기 적응 종합계획) 국무총리는 제25조제2항 제15호의 농업·농촌 기후위기 적응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업의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
  - 2.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기자재·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3. 농업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4.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 5. 기후위기 대응 및 전환 정책 추진에 필요한 농업·농촌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6. 제94조에 따른 지속적인 기후변화영향평가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7. 탄소중립사회 이행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각종 재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 8. 기후변화 관련 상시 정보제공 및 정기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사항
- 9.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순환적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10. 위 각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할당 및 업무배치에 관한 내용
- 11. 각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변화 정책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 및 탄소중립 농업·농촌으로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6조(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농촌 지역에 설치·운용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경우 해당 지역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농지를 보전하며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에 설치・운용하는 신・재생에 너지 설비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용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모든 주민이 그 수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절 농촌 지역의 발전 및 농촌주민의 권리보장

- 제97조(농촌 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 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 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 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 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8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99조(조건불리지역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편의 제공, 물·전기·연료 등 생활 필수에너지 공급 시설 설치, 찾아가는 교육·복지·의료서비스의 시행등 주거환경의 개선과 거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0조(농촌 지역 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생산 단지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1조(농촌주민 등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기

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농촌에 집중되어 농업 여건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예 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발생구역 내 처리 원칙 등 정책을 세 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한 농민과 농촌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근 주민의 알권리, 가동중지요청권·피해저감조치 및 피해배상청구권 보장 등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3조(골재채취 허가 제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로 농업 여건 및 농촌주민의 생활 환경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인접 농지 및 주거지와 이격거리를 둘 것을 골재채취 허가조건으로 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골재채취로 인한 농민과 농촌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근 주민의 알권리, 채취 중지요청권·피해저감조치 및 피해배상청구권, 복구요청권보장 등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4조(산업시설의 환경영향 등으로 인한 농업 및 농촌 피해 예방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또는 농촌 인근에서 「산업 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신 규화학물질이나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생산·

사용·운반·보관하는 산업시설 또는 그 밖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농업 생산이 저해되거나 농촌주민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 유해인자 또는 환경영향과 농업 생산 저해 또는 건강상 위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역학조사(疫學調查)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유해인자 또는 환경변화로 인한 농민과 농촌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의 알 권리, 시설 가동중지요청권·피해저감조치 및 피해배 상청구권, 복구요청권 보장 등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5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6조(도시농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농업·농 민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7조(농업 및 농촌 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 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 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8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농촌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자금 관리의 투명성·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업무
  - 2. 제87조제2항에 따른 농민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 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 ·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 4.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정보
- 5.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③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 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9조(농촌 지역 교육여건의 개선과 농촌 출신 학생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 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출신 학생이 거주 지역 외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주거·생활과 학습을 지원하고, 농촌 출신 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0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충분한 복지를 누리며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농 등에 대한 소득 안정,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민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1조(의료서비스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출산, 노인질환, 농약 중독,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 등에 대한 농촌 지역의

필수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 야 한다.

- 제112조(농촌 거주 노인에 대한 돌봄 체계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충분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인력과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3조(다문화가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 다문화가 족에 대하여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취업 등 능력개발을 지원하며 출신국과 교류를 증진하는 등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절 통일 대비 농민·농업·농촌 정책과 농업 부문 통상 및 국제협력

- 제114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 등의 조사·연구)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 농업 생산기반, 농업 과학기술, 농업 운영지도, 농민 교육 및 농업 통계 등에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농촌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5조(남북 농업협력 및 농산물 교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주민의 식량권 보장을 위하여 남북 농업협력을 확대하고 농산물 및 그 가공품 교류를 증진하여야 한다.

- 제116조(농업 부문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① 정부는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필요한 농업 부문 통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농업 부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다른 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부문에 부담을 전가하는 통상정책을 수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정부는 농업 부문 주요 통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는 경우 농민과 농촌주민의 의견을 수 렴하여야 하고, 관련 단체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 제117조(농업 부문 통상조약 체결 시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정부는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결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향 평가결과와 달리 특정 품목 재배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는 경우 위

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통상조약의 개정 추진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8조(농민·농업·농촌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민·농업· 농촌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민·농업·농촌 정책 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세계의 농업·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민·농업·농촌 부문의 인적·물적 ·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9조(농산물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민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와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0조(농산물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 내의 농민·농업·농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장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등

- 제121조(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민의 육성, 농산물·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한다)을 설립한다.
  - ② 농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농정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다.
  - ④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농업ㆍ농촌 분야의 정보화 촉진
  - 2. 농업·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홍보
  - 3. 농업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 4. 농업·농촌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 5. 농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 6. 농업ㆍ농촌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 7. 농림수산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정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농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2조(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7조 제2항에 따른 농민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 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다.
  -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제87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 관리 업무
  - 3. 농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 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 5.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장 보칙

- 제123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 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4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민·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있다.
- 제1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94조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